

수원시 고시 제2026 - 69호

##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11일

수원시장

붙임: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부서	기업지원과	담당자 직성명	주창환	전화 번호	031-5191-2338
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

#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

## I. 변경 사유

### 가. 유치업종 추가 (산업시설구역 공장시설에 M70, M72 추가)

-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, 지역특화사업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산업 유치가 필요하며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량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실정임
- 수원델타플렉스 내 연구개발 및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추가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델타플렉스 관리를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

### 나. 산업단지의 유희부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추가

-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 선도로 위해 산업단지의 주차장 등 유희부지에도 태양력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.

: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, 경기도 산업입지과-5318(2024.05.09.)

## ■ 주요 변경 내용

변경 내용	구역	업종코드	비고
유치업종 및 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 변경	산업시설구역	M70111 M70119 M70121 M70129  M72919	- 연구개발업 (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,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,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에 한함)  -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(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에 한함)
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 및 입주대상 업종, 입주 자격 변경	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	D35114	- 태양력 발전업 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) -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 부분에 한함.

## II. 수원델타플렉스 개요 (변경)

### 가. 관리기관 (변경)

- 기정 : (사)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
- 변경 : (사)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

### 나. 조성목적 (변경없음)

-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IT·BT 등 핵심 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

### 다. 추진경위 (변경)

- 1995.09.23 : 1단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
- 2002.07.10 : 1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(테크노게임밸리 → 지방산업단지)
- 2003.04.28 : 1단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3-83호)
- 2003.12.22 : 1단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3-325호)
- 2004.06.05 : 1단지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4-174호)
- 2005.02.28 : 2단지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(수도권정비위원회 제450호)
- 2006.05.09 : 2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(경기도 고시 제2006-142호)
- 2006.08.07 :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6-248호)
- 2006.12.06 : 2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(1·2단계 통합)
- 2007.07.10 : 2단지 수원산업단지(2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7-212호)
- 2007.12.31 : 2단지 수원산업단지(2단지) 관리기본계획 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7-489호)
- 2008.01.14 :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08-3호)
- 2008.12.04 : 2단지 수원산업단지(2단지)개발 및 (경기도 고시 제2008-482호)
- 2008.12.26 : 3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(수원시 고시 제347호)
- 2009.02.11 : 2단지 수원산업단지(2단지)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인가  
(경기도 고시 제2009-57호)
- 2009.11.22 : 3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(대규모 개발사업)  
(수도권정비 안건번호 제597호)

- 2010.05.1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0-123호)
- 2010.08.19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관리기본계획 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0-206호)
- 2010.10.29 :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(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)
- 2010.11.09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0-266호)
- 2011.11.14 :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(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)
- 2011.11.28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1-222호)
- 2012.09.21 :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1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도고시 제2012-294호)
- 2013.06.20 :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1단지) 개발계획 변경승인  
(도고시 제2013-170호)
- 2013.09.13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3-269호)
- 2014.01.24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4-19호)
- 2014.03.19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  
(수원시 고시 제2014-70호)
- 2014.07.01 :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1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도고시 제2014-189호)
- 2014.07.01 : 2단지 수원산업단지(2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경기도 고시 제2014-191호)
- 2014.08.18 :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(지원시설용지 획지 분할 등)
- 2014.09.0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 지구지정(개발계획) 변경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4-186호)
- 2014.12.29 :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(인쇄업 및 지식산업센터 반영등)
- 2015.01.2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 개발계획 변경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5-23호)
- 2015.03.30 :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1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도고시 제2015-5049호)
- 2015.04.20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5-93호)
- 2015.11.27 :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 
(인쇄출판 부지 및 지식산업센터 업종 추가)

- 2015.12.04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5-2035호)
- 2016.04.0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
(수원시 고시 제2016-102호)
- 2016.04.07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 
지형도면(변경)고시 (수원시 고시 제2016-106호)
- 2016.04.2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 
고시 (수원시 고시 제2016-115호)
- 2016.04.2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6-116호)
- 2016.06.03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6-153호)
- 2018.02.01 : 3단지 수원산업단지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8-30호)
- 2019.04.19 : 3단지 수원 일반산업단지(3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9-122호)
- 2019.05.23 : 3단지 수원산업단지(3단지)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9-161호)
- 2019.06.12 : 3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3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9-184호)
- 2019.07.12 : 1,2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(1,2단지)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 
(도고시 제2019-5107호)
- 2019.10.15 :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(변경) 수립 고시 (수원시 고시 제2019-326호)
- 2019.11.08 : 수원델타플렉스(1,2,3블록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9-352호)
- 2019.11.15 : 수원델타플렉스(1,2,3블록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19-358호)
- 2020.03.30 : 수원델타플렉스(1,2,3블록) 개발계획 변경,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20-95호)
- 2020.03.31 : 수원델타플렉스(1,2,3블록)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20-94호)
- 2022.05.18 :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(변경) 수립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22-211호)
- 2022.07.29 :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
(수원시 고시 제2022-320호)

라. 분양 현황 (변경)

(기정)

(단위:㎡)

구 분	분양 현황		
	총 면 적	분 양	미 분 양
계	1,257,510.50	868,078.40	-
산업시설구역	801,802.60	801,802.60	-
복 합 구 역	21,418.20	21,418.20	-
지원시설구역	33,659.10	29,020.70	-
공공시설구역	261,109.20	15,836.90	-
녹 지 구 역	139,521.40	-	-
조 성 기 간	2003 ~ 2016		
조 성 기 관	수원시		

(변경)

(단위:㎡)

구 분	분양 현황		
	총 면 적	분 양	미 분 양
계	1,257,510.50	858,422.90	
산업시설구역	801,802.60	801,802.60	
복 합 구 역	21,418.20	21,418.20	
지원시설구역	33,659.10	29,020.70	
공공시설구역	261,109.20	6,181.40	
녹 지 구 역	139,521.40	-	
조 성 기 간	2003 ~ 2016		
조 성 기 관	수원시		

마. 입주 현황 (변경)

(기정)

(단위 : 개사, 2021.03.01.기준)

구 분	계	입 주 업 체 수	
		개 별 공 장	지 식 산 업 센 터
계	839	429	410
제 조 업	692	423	269
비 제 조 업	147	6	141

(변경)

(단위 : 개사, 2025.10.31.기준)

구 분	계	입 주 업 체 수		
		개 별 공 장	지 식 산 업 센 터	물 류 시 설
계	1,040	454	585	1
제 조 업	821	451	370	-
비 제 조 업	219	3	215	1

바. 입지 여건 (변경)

시설명	규 모 및 용 량		시행기관
	기정	변경	
도 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로1-10호선 : L=1,070m, B=35m</li> <li>• 진입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천~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.5km권에 입지 (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 입지)</li> </ul> </li> <li>• 단지내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로(1개노선) : 866m</li> <li>- 중로(22개노선) : 7,664m</li> <li>- 중로(1개노선) : 105m (보행자전용도로)</li> <li>- 소로(3개노선) : 597m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로1-31호선 : L=1,120m, B=35m</li> <li>• 진입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천~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.5km권에 입지 (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 입지)</li> </ul> </li> <li>• 단지내 도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로(4개노선) : 2,372m</li> <li>- 중로(31개노선) : 9,346m (보행자전용도로 포함)</li> <li>- 소로(5개노선) : 804m (보행자전용도로 포함)</li> </ul> </li> </ul>	수원시
용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업용수 : 6,607m<sup>3</sup>/일</li> <li>• 생활용수 : 815.1m<sup>3</sup>/일</li> </ul>		수원시
전 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요량 54,304(Mwh/년) → 병점변전소 및 남수원변전소</li> <li>• 연간 119.68KVA(2,200KVA(2009년 이후 증가분) → 봉담변전소 신설예정</li> <li>• 연간 193,754MWh → 준공예정인 고색변전소에서 공급</li> </ul>		한국전력 공사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요량 1,362회선</li> <li>•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</li> </ul>		(주) KT
폐기물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생량 88,081kg/일</li> </ul>		자체처리, 위탁처리
폐수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생량 3,693.3m<sup>3</sup>/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발생량 4,016.9m<sup>3</sup>/일</li> </ul>	자체처리, 위탁처리
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,432(Gcal/년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1,810(Gcal/년)</li> </ul>	(주)삼천리 도시가스

※ 변경사유 :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내용 반영

### Ⅲ.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(변경)

#### 가. 관리기본방향 (변경없음)

##### 1) 목 표

- 가)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
- 나)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
- 다)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

##### 2) 추진 방향

- 가)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
- 나)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
- 다)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창출 기업유치
- 라)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

#### 나.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분계획 (변경)

##### 1) 용도별 구역 면적 (변경없음)

(단위 : m<sup>2</sup>, %)

구분	총 면 적	산업시설구역	복합구역	지원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녹지구역
수원 델타플렉스	1,257,510.5	801,802.6	21,418.2	33,659.1	261,109.2	139,521.4
	(100.0)	(63.8)	(1.7)	(2.6)	(20.8)	(11.1)

■ 용도별 구역 평면도(변경없음)



## 2)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(변경)

(기정)

구 분	건축물의 범위	
산업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집법” 이라함)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</li> <li>•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</li> <li>•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(통합이전 3블록 물류시설 부지에 한함)</li> </ul>	
지원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, 기타 공용의 청사 등</li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별표 &lt;용도별 건축물의 종류&gt;에 따른 아래의 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린생활시설(단란, 안마,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고시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)</li> <li>- 업무시설</li> <li>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</li> <li>- 판매 및 영업시설(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과 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에 한함)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건축물 건축 시 개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.</p>	
공공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</li> <li>※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</li> <li>• 공원,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</li> </ul>	
녹지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녹지구역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건축물</li> </ul>	
복합시설 구역 (지원시설 + 산업시설)	지원시설용도 (30%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허용용도</li> <li>• 공동주택 중 기숙사(근무자 편의 증대)</li> <li>• 운동시설(휘트니스센터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)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보육시설 입지허용)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(영화관)</li> <li>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소, 격리병원, 공공의료시설 제외)</li> </ul>
	산업시설용도 (70%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 장</li> <li>- 기존 1단계 허용업종(복합업종)</li> </ul>
	지식산업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용도 : 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</li> <li>※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%이내 허용</li> </ul>

(변경)

구 분	건축물의 범위	
산업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(이하 “산업집적법” 이라함)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(물류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건축법 시행령 별표 &lt;용도별 건축물의 종류&gt;에 따른 아래의 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</li> </ul> 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	
지원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, 기타 공용의 청사 등</li> <li>• 건축법시행령 별표 &lt;용도별 건축물의 종류&gt;에 따른 아래의 시설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린생활시설(단란, 안마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종교집회장, 장의사, 고시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)</li> <li>- 업무시설</li> <li>-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에 한함)</li> <li>- 판매 및 영업시설(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</li> <li>-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과 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에 한함)</li> </ul> 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 <p>※ 건축물 건축 시 개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.</p>	
공공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</li> <li>※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</li> <li>• 공원,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	
녹지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녹지구역 유지·관리에 필요한 건축물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	
복합구역 (지원시설 + 산업시설)	지원시설용도 (30%미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존 허용용도</li> <li>• 공동주택 중 기숙사(근무자 편의 증대)</li> <li>• 운동시설(휘트니스센터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)</li> <li>• 노유자시설(보육시설 입지허용)</li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(영화관)</li> <li>•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소, 격리병원, 공공의료시설 제외)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
	산업시설용도 (70%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장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1단계 허용업종 (복합업종)</li> </ul> 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
	지식산업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용도 : 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</li> <li>※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%이내 허용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(단,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

## ■ 복합구역에 관한 계획도

수원델타플렉스 복합용지도



- ※ 단일필지에 건축물 입주시 보행통로는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 2m로 하되 담장등 이와 유사한 차폐시설의 설치로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다.
- ※ 지식산업센터 입주시 보행통로는 피로티 형식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토록 설치하도록 한다.  
피로티 형식의 보행통로 설치시 보행통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의 1/2 범위 내에서 이동하여 설치 가능하며, 필지 합병시에도 기준은 현재의 대지 경계로 한다. 이 외에 설치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.
- ※ 공동건축 가능 필지내에서 공동건축시 필지 합병은 가능하나 합병된 필지를 분할시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.

다.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(변경)

1) 업종별 배치계획 (변경)

(기정)

업종별		계	
		필지수	면적(m <sup>2</sup> )
총계		213	823,220.8
소계		207	801,802.6
산업 시설 구역	개별 입지	203	801,802.6
	지식 산업 센터	5	
복합 구역	소계	6	21,418.2
	복합업종, 지식산업센터	6	21,418.2
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. 새로 개편된 한국산업분류코드(KSIC-10) 번호임.

※ 개별입지 마스크제조업(13)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.

※ 개별입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.

※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[근거 : 산통부 입지총괄과-586(2014.4.2.)호]

※ 복합업종 :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(58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을 제외한 업종.

※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~52102 업종만 해당하며,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 가능.

(변경)

업 종 별		계	
		필지수	면적(m <sup>2</sup> )
<b>총 계</b>		<b>213</b>	<b>823,220.8</b>
산업 시설 구역	<b>소 계</b>	<b>207</b>	<b>801,802.6</b>
	개별 필지	203	801,802.6
	지식 산업 센터	5	
복합 구역	<b>소 계</b>	<b>6</b>	<b>21,418.2</b>
	복합업종, 지식산업센터, 태양력 발전업(35)	6	21,418.2
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11)에 의한 코드 번호임.

※ 개별필지 마스크제조업(13)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.

※ 개별필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.

※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[근거 : 산통부 입지총괄과-586(2014.4.2.)호]

※ 복합업종 :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(58),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(18), 기타 제품 제조업(33)을 제외한 업종.

※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~52102 업종만 해당하며,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 가능.

※ 개별필지 연구개발업(70)은 업종코드 세분류 70111, 70119, 70121, 70129에 한함.

※ 개별필지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(72)은 업종코드 세분류 72919에 한함.

## 2) 배치기준 (변경없음)

-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융·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1·2·3블록의 산업시설 구역을 하나의 관리권역으로 일원화하고 입주허용업종을 통합하여 배치
-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융·복합 추세에 맞추어 복합구역에 복합업종으로 배치
-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.

다만,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함.

■ 업종별 배치계획도 (기정)



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(기정)		업종별 배치계획도(기정)
<b>범 례</b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margin-bottom: 5px;"> <div style="width: 20px; height: 10px; background-color: #add8e6; border: 1px solid black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0.8em;">산업시설 구역 ※ 산업시설 구역은 업종별 배치 참조</div> </div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width: 20px; height: 10px; background-color: #0000ff; border: 1px solid black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0.8em;">지식산업센터 ※ 지식산업센터는 업종별 배치 참조</div> </div>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-bottom: 10px;"> <div style="width: 100px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osition: relative;"> <span style="position: absolute; left: 0; bottom: -5px;">0</span> <span style="position: absolute; right: 0; bottom: -5px;">300</span> </div> <div style="margin: 0 10px;">50 100</div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</div>

■ 업종별 배치계획도 (변경)



라. 입주관리 계획

1) 입주대상 업종 (변경)

(기정)

구분	통 합 업 종	
	업 종	분류번호
개별 입지 (14종)	1. 섬유제품 제조업:마스크(13229)만 허용	13
	2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3.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21
	4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 제외	25
	5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27
	7. 전기장비 제조업	28
	8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9.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30
	10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: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31312)만 허용	31
	11. 기타 제품 제조업	33
	12. 태양에너지 발전업	35
	13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	14. 출판업	58
지식 산업 센터 (23종)	1. 섬유제품 제조업:의복제외	13
	2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	3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20
	5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
	6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	7. 1차 금속 제조업	24
	8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	9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10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	11. 전기장비 제조업	28
	12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13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	14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
	15. 가구 제조업	32
	16. 기타 제품 제조업	33
	17. 태양에너지발전업	35
	18. 출판업	58
	19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	20. 정보서비스업	63
	21. 연구개발업	70
	22. 전기 통신업	612
	23. 지식산업 27종(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)	

(변경)

구분	통합업종	
	업종	분류번호
개별 필지 (16종)	1. 섬유제품 제조업:마스크(13229)만 허용	13
	2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3.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	21
	4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 제외	25
	5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	27
	7. 전기장비 제조업	28
	8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9.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	30
	10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: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31312)만 허용	31
	11. 기타 제품 제조업	33
	12. 태양력 발전업	35
	13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	14. 출판업	58
	15. 연구개발업	70
	16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지식 산업 센터 (23종)	1. 섬유제품 제조업:의복제외	13
	2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14
	3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18
	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: 의약품 제외	20
	5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21
	6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
	7. 1차 금속 제조업	24
	8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	25
	9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
	10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7
	11. 전기장비 제조업	28
	12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
	13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
	14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31
	15. 가구 제조업	32
	16. 기타 제품 제조업	33
	17. 태양력 발전업	35
	18. 출판업	58
	19.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	20. 정보서비스업	63
	21. 연구개발업	70
	22. 전기 통신업	612
	23. 지식산업 27종(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)	-

## 2) 입주제한 업종 (변경)

(기정)

-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 제한
- 소음·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·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  
(단, 소음·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·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·관리 업체 제외)
-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**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체**
-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  
(단,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)
-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, 보관, 저장하는 업종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“지정악취물질(22개항목)” 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
(단,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)
  - ※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,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.
- 관리기관은 공해, 용수, 인접 업체영향,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(공정)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  - ※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(분양·매매·경매·기타)전에 산업단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

■ 허용업종 중 입주제한업종 및 분류번호

구 분	제 한 업 종	
	업 종	분류번호
개별 입지	1. 섬유제품 제조업(13) 중 마스크제조업(13229)을 제외한 전 허용	13
	2. 도금업(25922) 등 60개 업종 [별첨 1]	25922 등
	3. 금속 문, 창,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	25111
	4.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	25112
	5.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	25113
	6.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	25114
	7.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	25119
	8.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	25121
	9.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	25122
	10.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	25123
	11.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	25130
	12.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	25200
	13.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	25923
	14.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	26600
	15. 일차전지 제조업	28201
	16. 축전지 제조업	28202
	17. 광섬유케이블 제조업	28301
	18.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	28302
	19.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	28303
	20.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	30201
	21.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	30202
	22.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	30203
	23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 중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31312)을 제외한 전 업종	31
	24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 중 일반 창고업 (52101), 냉장 및 냉동 창고업 (52102)을 제외한 전 업종	52
지식 산업 센터	1. 도금업(25922) 등 60개 업종 [별첨 1]	25922 등
	2.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,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	142, 15110, 14499
	3.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201
	4.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	202
	5.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	203
	6. 1차 철강 제조업	241
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 번호임. 새로 개편 된 한국산업분류코드 (KSIC-10) 번호임.

## (변경)

-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 제한
- 소음·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·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  
(단, 소음·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·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·관리 업체 제외)
-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업체
-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  
(단,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)
-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, 보관, 저장하는 업종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“지정악취물질(22개항목)” 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
(단,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)
  - ※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
-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,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.
- 관리기관은 공해, 용수, 인접 업체영향,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(공정)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
  - ※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(분양·매매·경매·기타)전에 산업단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

■ 허용업종 중 입주제한업종 및 분류번호

구 분	제 한 업 종	
	업 종	분류번호
개별 필지	1. 섬유제품 제조업(13) 중 마스크제조업(13229)을 제외한 전 업종	13
	2. 도금업(25922) 등 56개 업종 [별첨 1]	25922 등
	3. 금속 문, 창,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	25111
	4.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	25112
	5.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	25113
	6.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	25114
	7.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	25119
	8.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	25121
	9.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	25122
	10.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	25123
	11.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	25130
	12.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	25200
	13.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	25923
	14.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	26600
	15. 일차전지 제조업	28201
	16.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	28202
	17.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	28209
	18. 광섬유케이블 제조업	28301
	19.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	28302
	20.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	28303
	21.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	30201
	22.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	30202
	23.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	30203
	24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1) 중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(31312)을 제외한 전 업종	31
	25.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(52) 중 일반 창고업 (52101), 냉장 및 냉동 창고업 (52102)을 제외한 전 업종	52
지식 산업 센터	1. 도금업(25922) 등 56개 업종 [별첨 1]	25922 등
	2.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,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	142, 15110, 14499
	3.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201
	4.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	202
	5. 비료, 농약 및 살균·살충제 제조업	203
	6. 1차 철강 제조업	241
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11)에 의한 코드 번호임.

[별첨 1] (변경)

(기정)

■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제한업종(KSIC-10)

표준산업 분류번호	업 종	비 고
20111	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
20112	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	
20119	석탄 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	콜타르 피치 포함
20121	산업용 가스 제조업	
20129	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	
20131	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	
20132	염료, 조제 무기 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	
20201	합성고무 제조업	
20202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	
20203	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	
20311	질소화합물,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	
20312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	
20313	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	
20321	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	
20322	생물 살균·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	
20411	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	
20412	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	
20413	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	
20421	계면활성제 제조업	
20494	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	
20501	합성섬유 제조업	
20502	재생섬유 제조업	
25911	분말야금제품 제조업	
25922	도금업	
25923	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	
26600	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	
28301	광섬유 케이블 제조업	
28302	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	

표준산업 분류번호	업 종	비 고
30393	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	
31202	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	
31322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	
32011	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	
32019	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	
32021	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	
32029	기타 목재가구 제조업	나전철기 가구 통합
32091	금속 가구 제조업	
32099	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	
33110	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	
33120	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	
33201	건반악기 제조업	오르간 등 건반악기 포함
33202	전자악기 제조업	
33209	기타 악기 제조업	현악기, 국악기 통합
33301	제조,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	
33302	놀이터용 장비 제조업	
33303	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	
33309	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	볼링용구 및 관련 장치물제조 포함
33401	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	
33910	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	
33920	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	
33931	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	
33932	전시용 모형 제조업	조화 및 모조 장식품, 교시용 모형 통합
33933	표구처리업	
33991	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	
33992	라이터, 연소물 및 흡연 용품 제조업	
33993	비 및 솔 제조업	
33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	우산,지팡이 통합

(변경)

■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제한업종(KSIC-11)

표준산업 분류번호	업 종	비 고
20111	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	
20112	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	
20119	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	콜타르 피치 포함
20121	수소제조업	
20122	산소,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	분류코드 신설
20129	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	
20131	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	
20132	염료, 조제 무기 안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	
20201	합성고무 제조업	
20202	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	
20203	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	
20311	질소화합물,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	
20312	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	
20313	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	
20321	화학 살균·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	
20322	생물 살균·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	
20411	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	
20412	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	
20413	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	
20421	계면활성제 제조업	
20494	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	
20501	합성섬유 제조업	
20502	재생섬유 제조업	
25911	분말야금제품 제조업	
25922	도금업	
25923	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	
26600	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	
28301	광섬유 케이블 제조업	
28302	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	

표준산업 분류번호	업 종	비 고
30393	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	
31202	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	
31322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	
32011	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	
32019	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	
32021	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	
32029	기타 목재가구 제조업	
32091	금속 가구 제조업	
32099	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	
33110	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	
33120	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	
33201	건반악기 제조업	
33209	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 제조업	기타악기, 전자악기 통합
33301	제조,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	
33302	놀이터용 장비 제조업	
33303	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	
33309	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	
33401	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	
33910	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	
33920	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	
33931	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	
33932	전시용 모형 제조업	
33933	표구처리업	
33991	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	
33992	라이터, 연소물 및 흡연 용품 제조업	
33993	비 및 솔 제조업	
33999	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	

※ ( )는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-11)에 의한 코드 번호임.

### 3) 입주 자격 (변경)

(기정)

구분	입주 자격
산업 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•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 (지식산업센터에 한함)</li> <li>• 보관·창고·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(물류시설부지에 한함)</li> <li>• 「산집법 시행령」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)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
지원 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</li> <li>•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 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</li> <li>•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
복합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,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</li> </ul>

(변경)

구분	입주 자격
산업 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•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 (지식산업센터에 한함)</li> <li>• 보관·창고·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(물류시설에 한함)</li> <li>•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(단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
지원 시설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</li> <li>•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 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</li> <li>•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</li> <li>• 「산업집적법 시행령」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(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)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(35114)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(단,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)</li> </ul>
복합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,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</li> </ul>

#### 4) 입주우선순위 (변경없음)

##### ① 산업시설구역

- 수원시 입주대상자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
-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
  - ※ 관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일 (수도권정비위원회 제553호)인 2008.8.12일 이후 이전하는 공장에 한함.

##### ② 지원시설구역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(지원기관)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(산업단지의 관리) 및 제44조 (입주기업체의 지원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
- 건축법 시행령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

#### 5) 입주절차 (변경없음)

-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
-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#### 마. 사후관리계획 (변경없음)

##### 1) 목 표

- 산업집적법,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

##### 2) 세부관리계획

###### ① 분양용지 관리

-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
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. 다만,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.
-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입주계약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.

-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.
-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,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.

## ② 환경관리

-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, 대기오염, 소음·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
-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·폐수,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
-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기 설치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산업단지 내·외에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휴식,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
- 산업단지 내 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고, 입주업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.

## ③ 안전관리

-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,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,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
-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
## ④ 기반시설지원

- 산업단지 내 도로, 전력,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

# 3)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

## ① 공장설립 지원

- 공장설립 업무 인·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
-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

## ② 생산활동 지원

-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·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
- 산·학·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,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
-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
-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·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
- 융자자금(산업기반기금, 산업기술개발자금) 지원 및 알선

## ③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

- 산업인력공단,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
- 단지 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 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
-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
- 종업원 통근용 공동 전세버스 운영 : 운영주체를 관리기관 또는 민간위탁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한다.

※ 단, 국토교통부에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또는 유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만 적용한다.

## ④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

-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
-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
-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

## ⑤ 지원시설 설치계획

- 관리청사, 금융시설, 후생시설, 차량관련시설, 공공업무시설, 복지회관 등

## ⑥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

-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 면적
  -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(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) 제2항 후단의 “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”은 1,650㎡ 이상으로 한다.
-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
-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
-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희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